



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2026. 7. 13.(월) 11:00 (지면) 2026. 7. 14.(화) 조간 배포 2026. 7. 13.(월) 06:00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가리비 선정

- 지원 희망 어업인은 7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2026년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가리비를 최종 선정하고, 7월 14일(화)부터 8월 13일(목)까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농어업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과 어업법인(이하 “어업인 등”)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올해도 지원대상 품목 선정을 위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센터’의 분석*을 토대로 행정예고를 통해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가리비를 최종 확정하였다.

* 「FTA농어업법」 제7조에서 정하는 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등 요건을 분석

** 해양수산부 장관(위원장), 해수부재경부산업부기획처 차관(당연직),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일(2022. 2. 1.) 이전부터 가리비를 생산한 어업인 등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 등은 신청기간 내 지급신청서와 함께 생산과 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협정(아세안 10개국,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이후 지방정부가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면, 9월부터 12월까지 연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 (지급한도) 어업인 최대 3,500만 원, 어업법인 최대 5,000만 원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리비를 생산하는 어업인 등이 빠짐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전 외에도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장요인 (051-773-5420)
	수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지수 (051-773-5427)



- (목적)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FTA 농어업법 제6조1항)

* FTA 직접피해보전제도는 '08년 한·미 FTA 계기로 도입되었으며, '12년 발효에 따라 피해대상품목 분석 시작, 이후 한·중 FTA로 직접피해보전제도 시행 연장

- (지원대상품목)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 할당물량이 증가한 모든 농산물(시행령 제4조2항1호)

- (지급기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직불금 지급(법 제7조1항)

- (가격) 협정의 이행으로 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 (총수입량)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총 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 수입량을 초과
- (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초과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 × 수입피해발동계수

- (지급액)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협정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정도(FTA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하는 값, 법 제8조1항)

- (지급단가)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가격 간 차액의 95%
 - * 직전 5개년 간 평균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간 평균가격 × 0.9
- (지원한도) 어업인 3,500만원, 어업법인 5,000만원

- (시행기간) 한·중 FTA 발효일('15.12.20)부터 15년(법 제6조)